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60

2026. 2. 9.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12.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5. 11. 1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1. 21. / 2026. 2. 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대상자들에게 공영 및 공공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권익 증진과 예우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 18 민주유공자 등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 범위 확대(안 제5조 별표1, 제26조 별표1의2)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범위 확대

• 최초 2시간 면제 이후 50% 감면 → 최초 24시간 면제 이후 초과시간 50% 감면

- 공공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범위 확대

• 50% 감면 → 최초 24시간 면제 이후 초과시간 50% 감면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등에 대하여 공영주차장과 공공부설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최초 입차 후 24시간은 면제한 후 초과시간에 대하여 50%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 전반의 보훈 의식을 고취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인근 자자체*[구리시 최초 48시간 면제/ 의정부시 (부설주차장→ 면제), (공영주차장→ 5시간 면제후 50%감면 등)]* 에서도 적극적으로 감면에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 7월 기준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는 총 7,97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폐 기」

- 2026년 1월 27일 이진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안건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함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붙임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74

2026. 2. 9.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1. 27. / 이진환 의원 등 10명

나. 회부일자 : 2026. 1. 2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6. 2. 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대상자들에게 공영 및 공공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현행 조례의 감면대상 기준이 항목별로 상이해 적용에 혼선이 우려되므로, 기준을 통일하여 감면 적용의 형평성과 행정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공공체육시설 이용 수요를 반영한 감면 기준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운영 과정에서의 민원을 예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차장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 및 관리 방식 신설(안 제26조)

❍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 18 민주유공자 등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 범위 확대(안 제5조 별표 1, 제26조 별표 1의2)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범위 확대

(최초 2시간 면제 이후 50% 감면 → 최초 24시간 면제 이후 초과시간50% 감면)

- 공공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범위 확대
  (50% 감면 → 최초 24시간 면제 이후 초과시간 50% 감면)
-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행사 및 교육 등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주차요금 면제 가능 규정 신설
  (안 제5조 별표1, 기타 마.)

❍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수강증 등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는 최대 3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규정 개정
(별표 1의2 기타 가.)

❍ 공공 체육시설 및 도시공원과 하천구역 내 체육시설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최대 3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규정 신설
(별표 1의2 기타 나.)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지난 제316회 정례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 주요 내용은 본문 안 제26조 제2항에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탄력적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일률적인 규정 적용으로 발생했던 행정적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 또한 【별표 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와 【별표 1의2】 공공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표의 각각의 주차요금 감면란의 감면 항목이 상이하여 주민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는데

▸ 두 표의 공통 사항 중 주요 변경 내용은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등에 대하여 최초 입차 후 24시간은 면제한 후 초과시간에 대하여 50%를 감면하고자 하였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만 있는 경형자동차에 대한 60% 감면사항과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동차 등에 대한 최초 2시간 면제 이후 50% 감면란을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와 같이 각각 50% 감면으로 통일하였습니다.

▸ 부설 주차장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및 체육문화센터 이용자에 대하여 수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면제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하였고,
공영주차장의 경우 공공기관의 행사나 교육 등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요금 면제 가능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 업무 수행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기준을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하여 감면 적용의 형평성과 행정 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붙임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874

2026. 2. 9.

이진환 의원

1. 수정이유

장애인, 다자녀가정, 임산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다자녀가정, 임산부 감면사항 규정 (별표 1, 별표 1의2)

- (원안) **50%감면** 장애인, 다자녀, 임산부 (별표 1, 별표 1의2)

→ (수정) **최초 24시간 면제 이후 초과시간 50% 감면**

장애인, 다자녀, 임산부 (별표1, 별표1의2)

나. 수정한 부분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

남양주시조례 제 호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1과 별표 1의2 50%감면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부 또는 모로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를 최초 24시간 면제 이후 초과시간 50% 감면으로 한다.

수정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50% 감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부 또는 모로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최초 24시간 면제 이후 초과시간 50% 감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부 또는 모로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수정한 부분 외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대로 한다.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75

2026. 2. 9.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1. 27. / 김지훈(국) 등 8명

나. 회부일자 : 2026. 1. 2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6. 2. 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자동차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정비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와 시설 개선·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을 규정함. (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확산 등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 주요 내용은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에 자동차 검사시설 개선사업 지원과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조합 등이 실시하는 무상점검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습니다.

❍ 자동차산업의 친환경 고효율 전기자동차 보급·이용의 증가세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영세한 내연기관 정비업체의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을 고려한 조치라 여려지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붙임 :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76

2026. 2. 9.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1. 27. / 김상수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 2026. 1. 2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6. 2. 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최근 전기자전거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의 날’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참여 확대와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기자전거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8호)

❍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운영 규정 신설(안 제6조의2제1항 ~ 2항)

❍ 자전거의 날 지정 및 예산 지원 근거 명확화(안 제11조제1항 ~ 2항)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전기자전거 이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충전 인프라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의 날’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정의를 조례에 신설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 행사 추진과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붙임 :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심 사 보 고 서

【2035년 남양주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의 안 번 호	884

2026. 2. 9.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1. 27.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6. 1. 2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6. 2. 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2021. 1. 5. 제정, 2022. 1. 6. 시행)에 의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시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2035년 남양주시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 에 대하여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

-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은 「도시공업지역법」 제2조에 따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로 다산동 준공업지역(51,579㎡)이 해당함
- 산업단지는 「도시공업지역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업지역”에 해당되므로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에서 제외

- 왕숙기업이전단지의 경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에 해당하나 3기신도시와 연계하여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체계적 관리 방안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본 과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반영 예정

○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 다산동 준공업지역(51,579㎡)의 산업현황 분석 결과에 따라 “산업정비형”으로 공업지역 관리유형을 세분되었으나,
- 우리 시 공업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단일공장부지(빙그레)는 현재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산업관리형”으로 설정하고,
- 소규모 사업체가 기입지해있는 재정비촉진지구와 도시계획시설부지는 “기타지역”으로 설정하고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관리되도록 함

○ 추진현황

- 2025. 3. 17. : 용역 착수
- 2025. 12. 5. : 중간보고
- 2026. 1. 7. : 공청회
- 2026. 1. 12. : 관련 부서(기관) 협의

○ 향후일정

- 2026. 2.. : 시의회 의견청취
- 2026. 3. : 市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6. 4. : 공업지역기본계획 확정 및 공고

※ “2035년 남양주시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은 「도시공업지역법」 제정·시행에 따라 수립이 의무화되어 추진 중이나, 향후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연계·병행 추진하여 시예산 절감.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의견 청취안은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 1월에 시행됨에 따라 도시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비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금번에 수립한 우리시 도시공업지역 대상지는 다산동 빙그레 제2공장 주변 1곳 51,579㎡에 해당하고 그 외의 왕숙기업이전단지는 LH의 3기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산업단지(진관, 금곡, 광릉)는 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업지역으로 분류되어 동 기본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결과 빙그레 제2공장은 단일공장 부지 16,209㎡로 구성되어 있어 “산업관리형”으로 설정하였고 지금·도농재정비 촉지지구에 반영된 존치 4, 8구역과 유수지 구역 35,370㎡ 등은 “기타” 지역으로 설정하여 도시재정비사업 등을 용이하게 하는 등 해당 지역의 실태분석에 따른 관리 방향을 합리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 행정절차 이행 결과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공청회 개최 공고를 남양주시보 및 신문에 게재(25.12.24.)하였고, 26년 1월 7일 다산1동행정복지센터에서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 청취 또한 26년 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진행하여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나, 관련 법에 따라 본 기본계획 수립을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 즉 25년 1월까지 수립하지 못한 점은 시정·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붙임 : 2035년 남양주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1부.